

고려말기 『蕃國儀注』의 활용 양상과 그 성격*

최 종 석**

1. 머리말
2. 『蕃國儀注』와 고려말기 외교의례 의주의 병용
3. 『번국의주』를 응용한 迎大明無詔勅使儀의 독자적 작성
4. 맺음말

1. 머리말

필자는 최근 몇 년간 원 복속기부터 조선초기에 이르는 시기의 외교의례를 탐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고려말기·조선초기의 역사상이 원 복속기를 분수령으로 한 사회구조적, 인식론적 전환의 자장 내에서 전개되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관련 연구 작업을 진행해 오던 중, 고려말기 이래 對明 외교의례의 전범으로 활용된 『蕃國儀注』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것을¹⁾ 계기로 시작되었다.²⁾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1036399).

**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1) 최종석, 2015 『고려말기·조선초기 迎詔儀禮에 관한 새로운 이해 모색: 『蕃國儀注』의 소개와 복원』 『민족문화연구』 69.

2) 『번국의주』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명이 1370년(공민왕 19, 홍무 3)에 편찬한 인쇄 책자이다. 명은 이전 왕조들과 달리 천자인 황제가 예제를 매개로 하여 중국과蕃國들로 이루어진 천하를 다스리는 새로운 방식의 화이질서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번국 내에서 번국이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까지 직접 작성하였다. 1370년 9월에 편찬된 『大明集禮』 賓禮 내의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가 이에 해당한다. 『번국의주』에 수록된 의례들은 바로

외교의례는 필자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데 매우 적절한 소재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외교의례에 관한 연구 작업을 시작할 무렵, 조선초기는 차치하더라도 원 복속기와 고려말기에 해당하는 고려후기의 외교의례에 관한 연구 현황은 극히 부진하였다는 말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원 복속기의 외교의례에 관해서는 儀注조차 확인되지 않아서인지 연구성과가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고려말기의 외교의례에 관한 연구도 五禮 연구의 일환으로 당시의 외교의례를 간략히 소개하는 것 위주여서, 『고려사』 禮志에 수록된 고려말기 외교의례(의주)인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迎大明無詔勅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 등을 피상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쳤다.³⁾ 그런데 이마저도 대명 외교의례의 교본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蕃國儀注』의 존재 자체를 간과하였고, 그러다 보니 고려말기의 외교의례 의주가 『번국의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조차 놓쳤다.⁴⁾ 또한, 최근 연구에서 규명된, 고려말기 외교의례의 원 복속기 그것과의 연속성과 그 속에서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 이르지 못하였다.

최근 몇 년간의 연구 작업 끝에 필자는 외교의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외교의례는 원 복속기를 분수령으로 하여 전면적으로 전환되었다. 몽골 등장 이전에 외교의례는 황제의 조서와 칙서 등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이들 의례였다. 『번국의주』는 고려의 요청에 응하여 명이 번국에서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해야 하는 의례(의주)만을 모아 成冊하여 고려 측에 사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석, 위의 논문 참조.

- 3) 주요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범직, 1991 『韓國中世禮思想研究: 五禮를 中心으로』, 일조각; 김창현, 2011 「『고려사』 예지의 구조와 성격」, 『한국사학보』 44.
- 4) 그런데 최근에는 필자의 연구를 포함하여 『번국의주』를 시야에 두고 대명 외교의례를 접근하는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종석, 2015 앞의 논문; 정동훈, 2015 「고려시대 사신 영접 의례의 변동과 국가 위상」, 『역사와 현실』 98; 이규철, 2015 「조선 성종대 외교의례 변경에 대한 논의와 대명의식」, 『역사와 현실』 98; 최종석, 2018 「조선초기 迎詔禮 운영과 『蕃國儀注』」, 『역사와 담론』 86; 윤승희, 2018 「고려 말 명 사신 영접의례의 성립」, 『한국중세사연구』 55; 최종석, 2019a 「고려후기 拜表禮의 창출·존속과 몽골 임팩트」, 『한국문화』 86; 최종석, 2019b 「고려후기 '전형적' 제후국 외교의례의 창출과 몽골 임팩트」, 『민족문화연구』 85.

의례가 전부이다시피 하였고, 당시 고려는 황제국 지방 衙門의 의례와 이질적이며 자체 제작한 의주에 의거해서 황제의 조서와 칙서 등을 맞이하였다.⁵⁾ 또한, 당시의 외교의례는 고려 군주가 외교(대외) 현장에 한해 황제 제후(신하)의 위상을 구현하는 성격의 것이었고, 이와 맞물려 拜表禮와 望闕禮(遙賀禮)⁶⁾처럼 국내에서조차 신하의 위상을 구현하는 성격의 의례는 거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원 복속기를 분수령으로 하여 외교의례는 그 이전 시기와 이질적이게도 국내에서조차 황제 신하의 위상을 구현한다든지, 황제국 지방 관부의 황제를 대상으로 한 의례와 同調한다든지 하는 특징을 노정하게 되었다. 이와 맞물려 원 복속 이전에는 행해지지 않던, 국왕의 황제를 대상으로 한 拜表禮와 望闕禮(遙賀禮)가 거행되었고 종래의 영조례는 전면 탈바꿈하였다.

둘째, 외교의례의 전환은 원 복속기에 외교의례 상에 전면적인 변모가 있었고 변모된 원 복속기 외교의례가 고려말기 이후로도 전유·계승되는 과정을 통해 구현되었다. 원 복속기의 외교의례는 그 이전 시기와는 확연히 다르게 고려 군주가 '고려국왕'이자 정동행성 승상의 위상에서 원(몽골)의 지방 아문의 의례를 활용한 채 거행되었다. 명은 前代에 고려에서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각종 지방 아문 의례를 활용·실행한 일을, 蕃國인 고려가 지방 아문의 의례와 다를 바 없는 각종 외교의례를 거행하고 이와 맞물려 천자의 천하 지배가 번국 내에서도 구현된 것으로 전유·계승하여, 번국 내에서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의 의주를 직접 작성하였다. 그러한 의례는 명 지방 아문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와 동질적인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고려 또한 전대에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각종 지방 아문 의례를 활용·변용해 온 일을 번국(제후국)이 행해야 하는 외교의례의 실천으로 전유하여, 명 측에 번국인 고려에서 명(황

5) 『고려사』 권65, 志19 禮7 賓禮에는 迎北朝詔使儀와 迎北朝起復告勅使儀가 기재되어 있다. 이것들은 北朝(요, 이후에는 금)의 詔使와 起復告勅使를 맞이하는 의례(의주)로 고려가 자체 제작한 것이었다. 고려전기 외교의례에 관한 종합적 연구로는 박윤미, 2017 『고려전기 외교의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6) 배표례는 고려·조선의 군주가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을 작성하여 자국의 사신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행하는 臣禮이고, 망궐례는 황제국 궁궐에서 거행되는 朝賀禮와 맞물려 고려·조선 내에서 국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이끌고 몸소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하는 賀禮이다.

제)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의 의주를 요청하였고, 명은 이들 의주를 일괄하여 책자 형태로 만들어 고려에 하사하였다(『蕃國儀注』의 하사). 고려는 명이 하사한 『蕃國儀注』의 수록 의주들을 토대로 그것의 복제품과도 같은 외교의례(의주)를 작성하였다. 조선에서도 고려말기와 마찬가지로 『蕃國儀注』를 바탕으로 의주를 작성하여 외교의례를 거행하였다. 이러한 전유·계승의 과정을 통해 지방 아문의 의례(의주)를 활용하여 거행되는 식의 원 복속기 외교의례가 그 이후로도 존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체 제작한 의주의 存否 면에서 원 복속기와 고려말기 이후는 상이하였다. 원 복속기의 경우 외교의례는 고려가 별도로 작성한 의주 없이 원(몽골) 지방 아문의 의례(의주)를 활용하여 거행되었다. 이와 달리 고려말기와 조선시대에 외교의례는 명이 사여한 『蕃國儀注』를 토대로 고려·조선이 자체 제작한 의주에 의거해서 거행되었다.

넷째, 『蕃國儀注』를 활용하는 방식 면에서 고려말기와 조선초기는 차이가 있었다. 고려말기에는 『蕃國儀注』에 수록된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를 거의 모사하다시피 하여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를 마련하였다. 여기에 더해 『蕃國儀注』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迎大明無詔勅使儀(명이 보낸 咨文 등의 公牒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의 의주)를 제작하였다. 조선초기에는 迎大明無詔勅使儀처럼 『蕃國儀注』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한 의주는 없었고, 『蕃國儀注』를 토대로 외교의례 의주를 작성하면서도 『번국의주』를 모사하는 식이 아니라 대폭 상세화하는 식으로 의주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외교의례 연구에 일정 정도 기여하였을 수도 있으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과 비례하여 그만큼 추가적이고 심층적으로 탐색해야 할 과제들이 부상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들 가운데 우선 고려말기 외교의례 방면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탐구해 보려 한다. 즉 다음 의문들의 해답을 탐색해 볼 것이다.

첫째, 『고려사』 禮志에 수록된 고려말기 외교의례(의주)인,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는 각각 『번국의주』에

수록된 해당 의주를 거의 모사하다시피 하여 작성된 것이라 할 때, 고려가 굳이 이들 의주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복제품이다시피 한 것을 굳이 마련하지 않고도 『번국의주』만을 사용해도 무방했을 텐데 말이다. 둘째, 고려는 『번국의주』에 수록된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를 대상으로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일괄 활용하여 외교의례(의주)를 작성·운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셋째, 본문에서 논증하듯, 咨文 등의 公牒은 皇命 문서가 아니었기에 예식 없이 단순히 접수만 해도 되었을 것인데, 고려가 공첩을 지니고 온 사신을 영접하는 예식인 迎大明無詔勅使儀(의주)를 작성하고 거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고려가 『번국의주』와 무관하게 迎大明無詔勅使儀를 자체 제작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방식과 전거는 무엇이었을까?

최근에 고려말기의 외교의례를 전론으로 다루는 연구성과가 공간되었다.⁷⁾ 비록 고려말기 외교의례 전반은 아니고 명 사신 영접의례에 한정하기는 했지만 주목할만한 성취라 하겠다. 더욱이 이 연구는 앞서 열거한 바 있는 고려말기 외교의례 방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의문들 가운데 일부를 다루고 있어, 본고 작성 과정에서 여러모로 참고되었다. 다만 이 연구는 본고와 연구 초점이 상이한 탓에 고려말기 외교의례의 전반을 다루지 않았으며 위에서 언급한 의문들을 해소하기 어려웠다. 또한, 필자는 검토 내용에 적지 않은 이견을 갖고 있다. 특히 『번국의주』를 토대로 한 고려말기 외교의례(의주) 작성의 목적 및 『번국의주』와 무관하게 고려가 자체 제작한 迎大明無詔勅使儀의 작성 방식과 활용 전거 등의 문제에서 그러하다.⁸⁾

이에 본문에서는 앞서 제기한 의문들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고려말기 외교의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본 작업이 對明 외교의례에 관한 연구 심화에 미약하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7) 윤승희, 2018 앞의 논문.

8) 윤승희(위의 논문)는 고려가 작성한 외교의례 의주와 『번국의주』에 수록된 의주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것을 통해 고려가 『번국의주』를 대체할 목적에서 외교의례(의주)를 작성하였다고 말하는 듯하고, 迎大明無詔勅使儀가 주로 迎北朝詔使儀 등의 고려전기 의주를 활용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았다. 필자는 이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본문에서 필자의 입장을 상술하도록 하겠다.

2. 『蕃國儀注』와 고려말기 외교의례 의주의 병용

『고려사』禮志에 수록된 고려말기 외교의례(의주)는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迎大明無詔勅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 등이다.⁹⁾ 이들 각각을 간략히 소개하면, 迎大明詔使儀는 명(황제)이 보낸 詔使(詔書)를 맞이하는 의례(의주), 迎大明賜勞使儀는 명(황제)이 보낸 賜勞使(禮物)를 맞이하는 의례(의주), 迎大明無詔勅使儀는 명이 보낸 咨文 등의 公牒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의주),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는 元正, 冬至, 聖節 시에 명 황제를 대상으로 한 望闕禮(의주), 進大明表箋儀는 고려 군주가 표전을 작성하여 자국의 사신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행하는 臣禮(의주)이다. 당시 고려는 이들 의주에 따라서 다섯 종의 외교의례를 거행하였을 것이다.¹⁰⁾

피상적으로만 본다면, 이들 5종의 의주 가운데 迎大明無詔勅使儀를 제외한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는 명이 편찬하여 고려에 하사한 『蕃國儀注』에 수록된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를 거의 모사하다시피 하여 작성된 것이었다.¹¹⁾ 迎大明無詔勅使儀만은 『번국의주』에 수록된 의주를 모방하지 않고 작성된 고려의 ‘독자적’ 작품이었다.¹²⁾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迎大明無詔勅使儀는 명이 보낸 咨文 등의 公牒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의주)인데, 『번국의주』에는 이러한 의례(의주) 자체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번국의주』에 수록된 의주를 모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던 것이다. 고려가 어떠한 이유에서 『번국의주』에 수록되지도 않은, 명이 보낸 咨文 등의 公牒을 지니고

9)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迎大明無詔勅使儀는 『고려사』 권65, 志19 禮7 賓禮에,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와 進大明表箋儀는 『고려사』 권67, 志21 禮9 嘉禮에 수록되어 있다.

10) 고려말기에 실제 거행된 외교의례는 이들 5종에 그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종석, 2019b 앞의 논문, 155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최종석, 2015 앞의 논문; 2018 앞의 논문; 최종석, 2019a 앞의 논문.

12) 최종석, 2015 위의 논문, 280면; 윤승희, 2018 앞의 논문, 585면 참조.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의주)를 자체 제작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 迎大明無詔勅使儀를 만들었는지는 후술토록 하겠다.

한편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가 각각 『蕃國儀注』에 수록된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를 거의 모사하다시피 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면, 머리말에서 언급하였듯이, 고려는 왜 굳이 이들 의주를 작성한 것일까? 『번국의주』를 모사하다시피 한 외교의례 의주를 제작할 바에는 차라리 『번국의주』만을 사용해도 무방한 데 말이다. 실제로, 조선초기에는 한동안 외교의례 의주를 자체 제작하지 않고 『蕃國儀注』만을 활용하기도 하였다.¹³⁾ 이러한 의문을 구체화해 보자면, 고려가 외교의례 의주를 제작한 것은 『蕃國儀注』를 대체하고자 한 목적에서인지, 아니면 양자를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데서인지, 만약 후자라면 양자의 관계는 어떠하였는지 등이 될 수 있겠다.

이들 의문을 명확히 해명하기란 쉽지 않다.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득이 『고려사』禮志에 수록된 고려말기 외교의례 의주와 『蕃國儀注』(『大明集禮』)에 수록된 의주를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들 의문을 풀어볼 수밖에 없다.¹⁴⁾ 필자는 이전 연구에서 蕃國接詔儀注와 迎大明詔使儀를, 그리고 蕃國進賀表箋儀注와 進大明表箋儀를 비교 분석한 적이 있긴 하나,¹⁵⁾ 그때의 작업은 고려가 『蕃國儀注』를 거의 모사하다시피 한 방식으로 외교의례 의주를 작성한 이유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 이유를 규명하는 데 관심을 쏟지 못하였다. 여기서는 우선 蕃國受印物儀注와 迎大明賜勞使儀를, 그리고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를 대상으로, 이러한 이유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비교 분석해 볼 것이다. 그런 후 이전에 행했던 검토 결

13) 고려말기에 고려가 작성한 외교의례(의주)는 조선에서는 활용되지 않은 듯하다. 최종석, 2018 앞의 논문, 146-150면 참조.

14) 『蕃國儀注』는 현존하지 않기에 대신 『大明集禮』에 기재된 의주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양자는 100%까지는 아니어도 이에 근접할 만큼은 동일하기에(최종석, 2015 앞의 논문, 286-299면), 『大明集禮』를 활용한 비교는 대과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15) 최종석, 위의 논문; 최종석, 2019a 앞의 논문.

과까지 포함하여 『蕃國儀注』에 수록된 의주와 고려말기 외교의례 의주를 비교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고려가 『蕃國儀注』를 거의 모사하다시피 한 방식으로 외교의례 의주를 작성한 이유를 파악해 볼 것이다.

가장 먼저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¹⁶⁾

우선 ‘于：於’(‘：’ 부호에서 앞과 뒤의 글자는 각각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에 기재된 것이다. 이하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사례는 양 의주 간의 단순 차이에 해당한다. ‘陳設：設’과 ‘陞詣拜位：詣拜位’는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의 작성 과정에서 의미 변화 없이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에서 한 글자를 생략한 사례이긴 하지만(각각 ‘陳’과 ‘陞’의 생략) 양 의주 간의 단순한 차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음으로 ‘是日：前期’, ‘引禮引衆官：引班引衆官’, ‘引衆官：引班引衆官’, ‘入立殿庭東西：入立於殿庭之東西’는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의 작성 과정에서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가운데 오탈자 부분을 찾아내 교정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들 사례에서는 확실히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쪽이 정확하다. 가령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의 ‘是日’은 ‘前期’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是日’ 뒤에 식장 배치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명 측이 작성한 여타 의주에서도 식장 배치에 관한 서술은 ‘是日’이 아니라 ‘前期’를 文頭로 한다. 식장 배치는 예식 당일(‘是日’)이 아니라 예식의 며칠 앞서(‘前期’)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¹⁷⁾

‘具冕服 未賜者服本國之服：具冕服’에서 후자인 ‘具冕服’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의 작성 과정에서 고려의 실정을 반영한 사례라 할 수 있다.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는 불특정 蕃國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보니, 명은 번국의 왕이冕服을 착용하고 해당 의례를 행하도록 규정하면서도冕服을 하사받지 못한 번국을 고려하여 ‘未賜者服本國之服’이라는 細註를 기입하였을 것

16) <부록 1>에서 두 의주의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17) ‘引禮引衆官：引班引衆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명 측이 작성한 여타 의주에서도 衆官(백관)을 인도하는 역할은 引禮가 아니라 引班의 몫이었다.

이다. 불특정 변국을 대상으로 한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와 달리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는 고려(왕)를 주체로 한 망궐예식의 의주였기에, 이미 명 측으로부터 冕服을 하사받은 고려는¹⁸⁾ 그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未賜者 服本國之服’이라는 불필요한 세주를 삭제하였을 것이다. 이외에 ‘蕃王：王位’ 사례에서 ‘蕃王’은 앞뒤 문맥상 ‘蕃王位’의 오기인데, 고려는 교정을 하면서 동시에 고려 실정을 반영하여 ‘蕃王位’를 ‘王位’로 바꾸었을 것이다.

‘引禮贊上香上香三上香：引禮贊三上香’에서 후자인 ‘引禮贊三上香’은 서술의 편의 차원에서 ‘引禮贊上香上香三上香’을 축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실제 의례의 축소와는 무관하였을 것이다.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에서조차 引禮의 ‘上香上香三上香’이라는 贊導에 따라 거행된 번왕의 예식절차를 ‘三上香’으로 축약 기재한 사실¹⁹⁾ 보더라도 그러하다. ‘司贊唱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王與衆官皆鞠躬 樂作 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樂止：司贊唱四拜 樂作 王與衆官 皆四拜 樂止’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곧 서술의 편의상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에 기재된 ‘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을 ‘四拜’로 축약하였을 것이다. 비록 그 폭이 컸을지라도 말이다.

다음 사례는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의 작성 과정에서 더욱 큰 폭의 축약과 생략을 보여준다. ‘司贊唱 搯笏鞠躬 三舞蹈 跪三拱手加額 山呼萬歲 山呼萬歲 再山呼萬歲 出笏俯伏興平身 王與衆官 搯笏鞠躬 三舞蹈跪 三拱手加額 山呼萬歲 山呼萬歲 再山呼萬歲 出笏俯伏興平身 司贊唱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王與衆官 皆鞠躬 樂作 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樂止：司贊唱 搯笏鞠躬 三舞蹈 跪左脚三叩頭 山呼萬歲 山呼萬歲 再山呼萬歲 出笏俯伏興 樂作 四拜 樂止’ 사례가 바로 그러하다. 우선적으로는, 후자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자의 ‘司贊唱 搯笏鞠躬 三舞蹈 跪三拱手加額 山呼萬歲 山呼萬歲 再山呼萬歲 出笏俯伏興平身’에서 ‘平身’ 글자의 생략을 볼 수 있다. 서술 면에서의 생략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王與衆官 搯笏鞠躬 三舞蹈跪 三拱手加額 山呼萬歲 山呼萬歲 再山呼萬歲 出笏俯伏興平身’ 부분이

18) 『고려사』 권72, 志26 輿服1 冠服 祭服 공민왕 19년 5월 “太祖高皇帝 賜冕服”

19) 『大明集禮』 권30, 賓禮1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引禮贊上香上香三上香 司香 以香 跪進于王之左 王三上香”

통제로 생략된 사실이다. 생략 부분은 司贊의 선창에 따라 王과 衆官이 행하는 동작에 관한 내용이다. 생략해도 문맥상 王과 衆官이 그러한 동작을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서술상 과감하게 이 부분을 삭제한 듯싶다.²⁰⁾ 또 다른 것으로는 ‘司贊唱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王與衆官 皆鞠躬 樂作 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樂止’를 ‘樂作 四拜 樂止’로 축약·생략한 사례이다. 司贊의 ‘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절차의 선창 및 왕과 중관의 해당 예식절차의 실행을 서술한 부분을 ‘樂作 四拜 樂止’로 과감하게 축약·생략한 것이다. 재삼 언급하듯 이는 의절 자체의 축약·생략이 아니었다. 이러한 서술상의 생략은 ‘樂作 四拜 樂止’라고만 기술해도 문맥상 원래 행해야 할 예식절차를 짐작할 수 있는 데서였을 것이다.²¹⁾

마지막으로는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의 작성 과정에서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에는 전혀 기술되지 않은 ‘명의 사신으로 고려의 도성에 머무는 동안 정월 초하루, 동짓날, 聖壽節을 맞이한 자는 常服으로 먼저 망궐례를 행하고 국왕 주도의 망궐례에는 참석하지 않는다(如有朝廷官 遇正朝冬至聖壽節 出使 在國中者 常服先行禮 不在王與衆官行禮之列)’라고 한 구절을 첨가한 점이다. 번국(왕)이 명 황제를 대상으로 망궐례를 거행해야 하는 名節에 명 사신이 번국(도성) 내에 체류 중인 경우는, 불특정 蕃國을 대상으로 작성된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에서는 전혀 혹은 미처 고려되지 못한 사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려에서 이러한 상황은 의례를 실행하면서 이미 부다쳤거나 부다치게 될 문제였다. 이 의례를 실제로 운영하는 고려 측은 해법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위의 부기 사항은 그 해결책이었다.²²⁾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의 작성은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를 거의 모사하다시피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오

20) 이는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의 작성 과정에서의 생략이 실제 의례 절차가 아니라 서술상의 생략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1) 한편 ‘跪三拱手加額’을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의 작성 과정에서 ‘跪左脚三叩頭’로 수정했다고 볼 수 있지만, 『大明集禮』와 달리 『蕃國儀注』에는 ‘跪三拱手加額’이 아니라 ‘跪左脚三叩頭’가 기재되어 있는 듯하다. 이에 관해서는 『세종실록』 권3, 세종 1년 4월 庚寅: 최종석, 2015 앞의 논문, 298면 참조.

22) 최종석, 위의 논문, 296면.

탈자를 교정한다든가, 불특정 번국을 대상으로 한 것을 고려에서 행하는 망궐례로 구체화한다든가,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 의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든가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는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특히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의 수정·보완판을 만들고자 한 데서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다고 하면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의 마련 후로는 舊버전인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는 고려에서는 더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에서 드물지 않게 확인되는 생략·축약의 사례는 전혀 다른 방향을 시사해주고 있다. 수정·보완판의 작성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면 생략·축약을 할 게 아니라 부연을 해도 모자랄 판에 부연은 없고 생략·축약만이 드물지 않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생략·축약의 정도가 꽤 심한 사례마저 있어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만으로는 원활한 의식 거행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²³⁾ 이러한 사실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가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의 대체물로 작성되지 않았을 것을 웅변한다.

이처럼 모순되는 듯한 양상은 다음과 같이 추정하면 합리적으로 해소된다.²⁴⁾ 즉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의 작성은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를 폐기·대체하고자 한 데서가 아니라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를 기본 전거로 활용하면서도 고려(인)가 일차적으로 참고·사용하기에 편리한 의주를 확보하고자 한 데서였을 것이다.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는 의례의 실무자나 감독·책임자가 해당 의례의 예식절차 전반과 그 흐름을 보다 정확하고 용이하고 빠르게 파악하고자 하는 용도에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하였을 것이기에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의 작성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교정도 하고 고려의 실정을 반영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하고 중복된다 싶은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축약하였을 것이다. 생략·축약은 무턱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문맥상으로 그 부분의 예식절차를 포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단

2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략 부분의 예식절차는 문맥으로 짐작 가능하다. 하지만 짐작만으로는 의식을 원활하고 정확히 치르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24) 필자는 이전 연구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했지만, 검토 결과는 여러모로 미흡하였다.

행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생략·축약은 예식 전반의 흐름을 단번에 파악하는데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생략·축약 부분의 정확한 예식절차의 내용을 확인·파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함께 사용되면서도 최종 심급으로 기능하였을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를 참고하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면모는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에 한정되지 않는다. 여타 외교의례 의주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迎大明賜勞使儀는 이 점을 더욱 뚜렷이 보여준다.²⁵⁾ 蕃國受印物儀注와 迎大明賜勞使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使者：使臣’(‘：’ 부호에서 앞과 뒤의 글자는 각각 蕃國受印物儀注와 迎大明賜勞使儀에 기재된 것이다. 이하의 사례도 마찬가지다)과 ‘遣官送使者還館：遣使送使臣還館’은 양 의주 간의 단순한 차이에, ‘引禮唱：引禮贊’은 迎大明賜勞使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蕃國受印物儀注의 오자를 교정한 사례에,²⁶⁾ ‘蕃國境：國境’, ‘蕃王：王’, ‘蕃王拜位：王拜位’, ‘蕃王及衆蕃官：王與衆官’, ‘使者捧所賜印并某物：使臣捧所賜物’은 迎大明賜勞使儀의 작성 과정에서 고려의 실정을 반영한 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使者捧所賜印并某物：使臣捧所賜物’에서 양자의 차이는 기존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고려가 이미 명 측으로부터 인장을 수여받아 더는 그럴 일이 없어²⁷⁾ 迎大明賜勞使儀의 작성 과정에서 인장을 삭제하고 예물만을 받는 예식으로 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引禮引蕃王入殿：王入殿’은 迎大明賜勞使儀의 작성 과정에서 서술의 편의를 위해 축약을 한 사례였을 것이다. 실제로는 蕃國受印物儀注대로 왕은 引禮의 인도 하에 궁전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司贊唱 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蕃王及衆官皆鞠躬 樂作 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樂止：司贊唱 四拜 樂作 王及衆官皆四拜 樂止’는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에서도 보았듯이 迎大明賜勞使儀의 작성 과정에서 서술의 편의상 ‘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을 ‘四拜’로 축약을 한 사례였을

25) <부록 2>에서 두 의주의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26) ‘鼓吹：鼓樂’도 교정 사례라고 판단된다. 蕃國受印物儀注 내 다른 곳에서는 鼓吹가 아니라 鼓樂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번국의주』의 여타 의주에서도 鼓樂으로 기록된 데서, 이것은 교정 사례일 것이다.

27) 윤승희, 2018 앞의 논문, 583-584면 참조.

것이다. ‘引禮唱鞠躬拜興拜興平身 使者與蕃王皆鞠躬拜興拜興平身 : 引禮唱 再拜使臣與王皆再拜’에서도 ‘鞠躬拜興拜興平身’은 ‘再拜’로 축약되었을 것이다. 특히 ‘使者宣制曰皇帝勅使某持印賜爾國王某 并賜某物 : 使臣宣制云云’ 사례는 迎大明賜勞使儀의 작성 과정에서 기술상의 축약과 생략을 뚜렷이 보여준다. ‘云云’ 식의 과감한 생략 표현은 迎大明賜勞使儀가 蕃國受印物儀注와의 병용을 전제로 작성된 데서 가능하였을 것이다.

迎大明賜勞使儀의 작성 과정에서 蕃國受印物儀注에 기술된 ‘王乘馬行’을 삭제했다거나 거꾸로 ‘凡行禮畢’, ‘及出’을 添入했다거나 하는 사례 등도 넓게 보아 고려 실정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고, 정확히는 고려(인)가 일차적으로 참고·활용하기에 편리한 방향에서 이루어진 조치였을 것이다.²⁸⁾ 특히 첩입 사례는 의주의 사용자·감독자가 첩입 부분의 앞뒤 문맥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다.

이처럼 迎大明賜勞使儀는 정도 차이가 있을지언정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와 동일한 방식과 용도로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차이마저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곧 迎大明賜勞使儀의 작성 또한 蕃國受印物儀注를 대체하고자 한 데서가 아니라 蕃國受印物儀注를 기본 전거로 삼으면서도 고려(인)가 일차적으로 참고·활용하기에 편리한 의주를 마련하고자 한 데서였을 것이다. 고려 입장에서 蕃國受印物儀注와 迎大明賜勞使儀는 양자택일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었고 迎大明賜勞使儀는 蕃國受印物儀注에 비해 사용하기에 편리하였을 것이다.

여타 외교의례도 마찬가지로, 迎大明詔使儀와 進大明表箋儀에 관한 기왕의 검토 내용을 지금 다루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다시금 들여다보면,²⁹⁾ 迎大明詔使儀와 進大明表箋儀의 작성 또한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迎大明賜勞使儀와 동일한 방식과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곧 오탈자

28) ‘王乘馬行’의 삭제 사례의 경우 이를 ‘王乘輦行’ 식으로 변개하지 않고 단지 삭제만 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王乘馬行’ 구절을 단순히 삭제만 한 결과, 사신을 맞이한 후 왕궁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국왕의 교통 방식은 그 선택지가 복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蕃國受印物儀注를 함께 활용하였을 사실을 감안하면, 迎大明賜勞使儀에서 국왕의 교통편은 말할 수도 사정에 따라서는 여타의 것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29) 최중석, 2015 앞의 논문; 2019a 앞의 논문 참조.

를 교정한다든가, 불특정 번국을 대상으로 한 것을 고려에서 행하는 의례로 구체화한다든가 하면서도, 서술 면에서는 『번국의주』의 해당 의주 가운데 일부를 생략·축약하기도 했다.

한편 고려말기에 『번국의주』를 활용하는 방식 면에서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지점은 고려가 『번국의주』에 수록된 의례들을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일괄 활용하여 외교의례 의주를 작성한 사실이다. 즉 고려는 『蕃國儀注』에 수록된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를 빠짐없이 활용하여 고려말기 외교의례 의주인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를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고려가 이처럼 『번국의주』를 일괄 활용하여 준용한 까닭은 무엇일까?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³⁰⁾ 그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명이 작성하여 하사한 외교의례를 고려가 준용한 현상의 遠因으로는 원 복속기에 고려가 원(몽골)의 지방 아문 의례를 활용하여 외교의례를 거행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정동행성의 설치도 전에 원(몽골)이 복속된 ‘외국’인 고려를 대상으로 일부 지방 아문 의례를 적용한 것을 계기로, 그리고 (후기) 정동행성의 설치 이후로 충렬왕이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하여 아직 도입되지 않은 원(몽골)의 지방 아문 의례를 마저 수용한 것을 또 다른 계기로 하여, 원 복속기의 외교의례는 고려 군주가 ‘고려국왕’이자 정동행성 승상의 위상에서 원(몽골)의 지방 아문의 의례를 활용하면서도 그러한 위상에 걸맞게 변용하는 방향으로 수렴된 채 거행되었다. 곧 원 복속기에 고려가 원(몽골) 지방 아문의, 황제를 대상으로 한 각종 의례를 전면 활용한 것을 遠因으로 하여, 고려는 명이 사여한 『번국의주』에 수록된 의례들을 일괄 활용하여 외교의례 의주를 작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현상의 近因은 고려와 명 공히 원 복속기에 고려에서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각종 지방 아문 의례를 활용·실행한 일을 轉有하여 계승한 행보라 할 수 있다. 명은 원 복속기에 고려에서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각종 지방 아문 의례를 활용·실행한 일을, 蕃國(제후)인 고려가 황제국이 마련한 의주를 토대로 각종 외교의례를 거행하고 이와 맞물려 천자의 천하 지배가 번국 내

30) 최종석, 2019b 앞의 논문.

에서도 구현된 것으로 전유·계승하였고 이로 인해 번국 내에서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의 의주까지 직접 작성하였다. 이러한 외교의례 의주가 바로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였다.

고려 또한 前代에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각종 지방 아문 의례를 활용·변용해 온 일을 번국(제후국)이 행해야 하는 외교의례의 실천으로 전유하였을 것이다. 이에 고려는 前代의 경험을 전유·계승하여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한 각종 의례와 그 방식을 지속하는 것 및 황제국 의주를 활용하여 외교의례를 거행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속에서, 명 측에 번국인 고려에서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의 의주를 요청하였고, 명은 이들 의주를 일괄하여 책자 형태로 만들어 고려에 하사하였다. 곧 명은 『蕃國儀注』를 하사하였다. 이들 의례(의주)는 고려에게 생소한 것이라기보다는 원 복속기 이래로 행해 온 익숙한 의례였을 것이다. 이에 고려는 하사받은 이들 의주를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일괄 활용하여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라는 대명 외교의례 의주를 마련하고 이들에 의거하여 대명 외교의례를 거행하였을 것이다.³¹⁾

3. 『번국의주』를 응용한 迎大明無詔勅使儀의 독자적 작성

고려는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의 작성에 더해서 명이 하사한 의주를 저본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성

31) 고려가 이처럼 『번국의주』를 일괄 활용하여 외교의례(의주)를 작성한 현상은 『번국의주』를 기본 전거로 삼으면서도 고려(인)가 일차적으로 참고·활용하기에 편리한 의주를 확보하고자 대명 외교의례(의주)를 작성하였을 사실과도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번국의주』를 준용하여 대명 외교의례를 운용해야 한다고 전제한 데서 그러하다. 이러한 전제나 감각은 고려(군주)가 원(몽골) 지방 아문의 의례를 활용하여 각종 외교의례를 거행한 역사 현실을 번국(제후국)이 행해야 하는 외교의례의 실천으로 전유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한 의주인 迎大明無詔勅使儀도 갖추고 있었다. 迎大明無詔勅使儀란 명이 보낸 咨文 등의 公牒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의주)이다. 정확히는 국왕을 수신인으로 하는 공첩을 맞이하는 의례였을 것이다. 명 사신을 통해 전달된 咨文 등의 公牒은 원 복속기 이래로의 관문서식 외교문서인 데서, 즉 중국 내에서 통용된 관문서인 咨文 등의 公牒이 원 복속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중국과 고려 간의 외교문서로 기능한 데서,³²⁾ 咨文 등의 公牒을 지니고 온 명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가 원 복속기 이래로의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원 복속기에 원(몽골)이 보낸 咨文 등의 公牒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가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계승한 의례가 고려말기에 거행되고 있었으리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원 복속기에는 원(몽골)이 보낸 咨文 등의 公牒이 외교문서로서 고려 측에 전달되었기는 해도, 이 과정에서 咨文 등의 公牒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는 거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迎大明無詔勅使儀 식의 의례 없이 公牒의 단순 전달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시 公牒의 行移는 다른 아닌 移牒을 의미하였을 것인데, 원 복속기에 원(몽골) 측의 고려를 상대로 한 移牒 사례는 여러 건 확인되지만, 그 과정에서 의례 거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당시 公牒을 맞이하는 의례가 거행되지 않았을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도 방증된다. 원 복속기 외교의례는 원(몽골) 지방 아문에서 거행되는 의례를 활용·변용하여 이루어졌는데,³³⁾ 원대에 지방 아문에서 咨文 등의 公牒을 맞이하는 의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후술하듯 원대를 계승한 명대에도 그러한 의례는 부재하였다. 본래 관부 문서의 행이(移牒) 시에는 의례가 거행되지 않았기에, 원·명대에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결국, 원대에 지방 아문에서 咨文 등의 公牒을 맞이하는 의례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와 맞물려 고려도 公牒을 맞이하는 의례를 거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지 문서 행정상으로 移牒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따름이다.

32) 이에 관해서는 森平雅彦, 2007 『牒と咨のあいだ: 高麗王と元中書省の往復文書』 『史淵』 144; 정동훈, 2010 『高麗-明 外交文書 書식의 성립과 배경』 『한국사론』 56 참조.

33) 최종석, 2019b 앞의 논문 참조.

고려말기에는 迎大明無詔勅使儀가 갖추어져 있는 데서 당시에 咨文 등의 公牒을 맞이하는 의례가 거행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의례의 거행은 고려의 자체적인 판단·필요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명의 지방 아문에서 咨文 등의 公牒을 맞이하는 의례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와 맞물려 명은 고려 측이 咨文 등의 公牒을 지니고 온 명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를 거행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확히는 그러한 의례를 거행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했을 것이다. 이러하였을 사실을 迎大明無詔勅使儀의 말미에 기재된 ‘手詔·勅符의 경우 이 의례를 쓰지 않고 [명] 조정에서 頒降한 의주에 의거한다(若有手詔勅符 則不用此禮 依朝廷頒降儀)’라는 구절에 관한 분석을 실마리 삼아 논증해 보도록 하겠다.

위 구절에서 手詔와 勅符를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할 시에 의거해야 한 ‘朝廷頒降儀’는 명 조정이 고려에 하사·반강한 의주가 아니었다. 고려와 명 측 자료 어디에도 手詔와 勅符를 맞이하는 의주를 명이 고려에 頒降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고려사』 예지 등에서도 그러한 의주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朝廷頒降儀’란 명의 지방 아문을 위시하여 해당 문서를 받는 관부에서 手詔와 勅符를 맞이하는 예식으로, 명 조정이 領內에 반강한 것으로 판단된다.³⁴⁾ 명 말기에 편찬된 『禮部志稿』에는 ‘홍무 연간에 정해진(洪武間定)’ 迎接敕符制諭儀가 수록되어 있는데, ‘朝廷頒降儀’는 이를 가리켰을 것이다. 迎接敕符制諭儀는 敕符, 丹符, 制諭, 手詔 등을 영접하는 예식이기 때문이다.³⁵⁾ 홍무 연간에 간행된 『洪武禮制』와 『諸司職掌』 등에는 迎接敕符制諭儀라는 의주 명칭이 보이지 않아도 迎接敕符制諭儀의 예식 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³⁶⁾

手詔·勅符를 맞이하기 위한 ‘朝廷頒降儀’, 달리 말해 迎接敕符制諭儀는 명의 지방 아문 등의 관부를 의례의 주체로 하여 마련된 것이어서 고려를 대상으로

34) 手詔는 황제가 스스로 친술한 조서로, 홍무제는 주로 조정의 대신들에게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할 내용을 전달할 때에 친필로 작성한 문서를 전달했는데, 그 親書는 격식도 매우 자유로우며, 전달 과정도 간단하고 신속한 특징을 보였다고 한다. 정동훈, 2017 『洪武帝의 명령이 고려에 전달되는 경로: 聖旨의 문서화 과정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39, 229면 참조.

35) 『禮部志稿』 卷22, 儀制司職掌.

36) 『洪武禮制』와 『諸司職掌』 참조.

한 것이 아니긴 했어도, 고려도 명으로부터 手詔·勅符를 받고 있었기에³⁷⁾ 이들 (외교)문서를 맞이하는 예식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서 및 황제가 국왕에게 하사한 예물과 달리 手詔·勅符의 경우 명 측이 하사해 준 의주가 없다 보니, 고려는 임기응변으로 명 지방 아문 등이 사용하는 의례(의주)를 활용하여 手詔·勅符를 맞이하는 예식을 거행하였을 것이다. 원 복속기에 원(몽골)의 지방 아문 의례를 활용하여 외교의례를 운용한 것과 흡사하게도 말이다.

이렇다고 하면 고려말기에 고려가 외교문서를 지니고 온 명 사신을 맞이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조서를 지니고 온 명 사신은 迎大明詔使儀로, 황제가 국왕에게 하사한 예물을 지니고 온 명 사신은 迎大明賜勞使儀로 영접하였고, 手詔·勅符를 지니고 온 사신은 迎接敕符制諭儀를 활용하여 맞이하였으며, 자문 등의 공첩을 지니고 온 사신은 迎大明無詔勅使儀로 맞이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자문 등의 공첩을 지니고 온 사신도 手詔·勅符처럼 명의 지방 아문 등에서 해당 문서를 맞이하는 예식(의주)으로 맞이했으면 되는데 굳이 자체적으로 迎大明無詔勅使儀를 작성한 까닭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명이 고려를 상대로 하여 의주를 반사해 주지 않은 데서는 공첩이나 手詔·勅符나 매 한 가지인데도 말이다.

고려가 手詔·勅符와 달리 자문 등의 공첩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의주)를 자체적으로 마련한 일차적인 이유는 활용 가능한 의례(의주)의 부재 때문이었을 것이다. 手詔·勅符, 조서, 인장·예물과 달리 자문 등의 공첩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예식(의주)은 명의 禮書類(『大明集禮』, 『洪武禮制』 등), 政書類(『諸司職掌』, 『大明會典』 등)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기록상의 누락에서가 아니라 공첩은 여타의 것과 달리 황명 문서가 아니었기에 예식 없이 단순히 접수만 해도 돼서였을 것이다.³⁸⁾ 고려 입장에서 보자면, 자문 등의 공

37) 勅符는 迎大明無詔勅使儀에서만 보이나, 手詔 사례는 다음과 같이 드물지 않게 확인된다. 『고려사』 권43, 世家43 공민왕 21년 9월 壬戌; 『고려사』 권44, 世家44 공민왕 22년 12월 癸丑; 『고려사』 권44, 世家44 공민왕 23년 6월 壬子; 『고려사』 권134, 列傳47 우왕 5년 3월 참조.

38) 그러했기에 자문 등의 공첩은 開讀儀가 필요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았다. 『大明會典』 卷74, 開讀儀 에 따르면, 이 의례를 요구하는 문서는 詔書, 赦書, 敕符, 丹符, 制諭, 手詔로

첩은 手詔·勅符와 달리 활용·적용할만한 의례(의주)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명의 지방 아문과 달리 고려가 모종의 이유에서 자문 등의 공첩을 지니고 온 사신을 굳이 예식을 갖추어 맞이하고자 한 점은 자문 등의 공첩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의주)를 자체적으로 마련한 또 다른 이유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명은 자문 등의 공첩을 맞이하는 예식(의주)을 고려(번국)에 하사하지도 않았고, 명 내예조차 공첩을 맞이하는 예식(의주)이 부재한 사실로 보아, 고려가 자문 등의 공첩을 예식을 갖추어 맞이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공첩을 맞이하는 예식(의주)을 작성·운영한 것은 명의 강요·요구에서가 아니라 고려의 판단·의지가 작용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고려가 공첩을 예식을 갖추어 맞이하는 유례없는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당시는 원 복속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관문서인 자문 등의 공첩이 양국 사이에 오갔고 특히 우왕대 이후로는 조칙이 아니라 자문을 위주로 외교 행위가 이루어진 현실이 무겁게 작용하였을 것이다.³⁹⁾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자문에는 일반적으로 홍무제의 聖旨가 수록된 사실로 인해, 고려는 공첩을 예식을 갖추어 맞이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황제의 결에 대기하고 있던 신료들이 홍무제의 聖旨를 그대로 받아 적어 紙面으로 옮긴 것을 宣諭聖旨라 하는데, 宣諭聖旨 가운데 中書省·禮部 등의 외교를 담당하는 관청을 청자로 한 것으로 고려에게 전달하도록 한 선유성지는 中書省·禮部 등이 고려에 보내는 자문 내에 수록되었다.⁴⁰⁾ 이렇듯 고려말기에는 외교 행위가 자문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자문에는 일반적으로 고려를 대상으로 한 홍무제의 성지가 담겨 있는 상황에서, 고려는 원 복속기와 달리, 그리고 명의 지방 아문과 달리 공첩을 접수하고 마는 식으로가 아니라 황명 문서인 詔書, 手詔, 勅符 등과 다름없이 예식을 갖추어 맞이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고려는 원컨 원치 않건 간에 자체적으로 迎大明無詔勅使儀를 작성해야 했을 것이다.⁴¹⁾

모두 황명 문서였다.

39) 정동훈, 2016 『高麗時代 外交文書 研究』,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승희, 2018 앞의 논문 참조.

40) 홍무제 시기 咨文과 宣諭聖旨에 관해서는 정동훈, 2017 앞의 논문, 233-235면 참조.

41) 迎大明無詔勅使儀의 마련 뒤에 공첩을 맞이하는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예식을 몇 차례 거행한 후 迎大明無詔勅使儀를 마련하였는지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어

그렇다면 迎大明無詔勅使儀의 마련 시에 여타 외교의례 의주와 달리 모사하다 시피 할 의주도, 직접 참고할만한 의주도 없는 여건에서, 고려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무엇을 전거로 삼아 이를 작성하였을까? 이 의문에 직접적인 해답을 줄 만한 기록은 전혀 없다. 迎大明無詔勅使儀라는 의주 자체를 제외하고는 관련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의주 분석을 통해 이 의문의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해답일지언정 말이다. 이하에서는 해답을 찾기 위해 迎大明無詔勅使儀의 의주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迎大明無詔勅使儀】

(a) 사신이 국경을 넘으면, 관문을 지키는 관리는 급히 (왕에게) 보고한다. 왕은 관리를 보내 멀리서부터 (사신을) 맞이하게 한다. 사신이 王京에 가까이 오면, 使臣入國境 守關官馳報 王遣官遠接 使臣近王京

(b) 期日에 앞서 (왕은) 有司에게 명령하여 迎賓館에 幄帳을 설치하고 성문과 거리에는 結綵를 하도록 한다.

前期 令有司 於迎賓館設幄帳 城門街路結綵

(c) 期日에 왕은 儀衛를 갖추고 성 밖 幄次로 나가 맞는데, 世子 이하 여러 관료들은 모두 따르는데 아울러 常服을 입는다. 사신이 도착하면 모든 관료들은 영빈관의 길 남쪽에서 위치대로 서서 기다리는데, 북쪽을 향하여 위계를 달리하면서 종으로 서고 同位는 횡으로 겹쳐 선다. 왕이 나와 幄次 밖에 서면 사신은 말에서 내려 왕과 마주 보고 揖을 한다. 그 후에 서로 말에 오르라고 사양하면서 함께 (궁궐로) 가는데, 사신은 길의 왼쪽으로, 왕은 길의 오른쪽으로 간다.

至日 王備儀衛 出迎於城外幄次 世子以下百官皆從 並常服 使臣至 百官以次立待于迎賓館道南 北向 異位重行 王出 立於幄外 使者下馬 與王對揖 後 相讓上馬 偕行 使臣由道左 王由道右

(d) 王宮에 도착하면 함께 말에서 내려 나란히 들어가는데, 왕은 서쪽으로 해서 문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후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윤승희(2018 앞의 논문, 587면)는 迎大明無詔勅使儀에 세자가 적시된 사실을 토대로 迎大明無詔勅使儀가 공양왕 즉위 직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타당한 추정이라 하겠다. 공양왕 이전부터도 공첩을 맞이하는 예식을 거행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기에, 공양왕 즉위 직후에 의주가 마련되기에 앞서 공첩을 맞이하는 예식은 이미 거행되어 오고 있었을 것이다.

으로 들어가고 사신은 동쪽으로 해서 문으로 들어간다. 正殿 가운데에 이르러 마주 서는데, 사신은 동쪽에 서고 왕은 서쪽에 선다. 口宣聖旨가 있으면 사신은 선 채로 (성지를) 말해 전하고, 왕은 북쪽을 향해 꿇어앉아 이를 듣는다. 그러고서 (사신이) 가지고 온 公牒을 받는다. 끝나면, 왕은 叩頭를 행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
至王宮 俱下馬偕入 王入門自西 使臣入門自東 至正殿中對立 使臣立東 王立西 有口宣聖旨 則使臣立宣 王北向跪聽 仍受賚來公牒 訖 叩頭興平身

(e) 왕은 사신의 앞으로 나아가서 몸을 약간 굽히고 황제의 안부를 묻는다. 사신이 대답한 이후에 왕은 북쪽을 향해 꿇어앉아 叩頭를 행하고 일어나 몸을 편 다음, 사신과 동서로 서로 마주 보고 재배한다.
王進使臣前 稍躬身 問聖躬萬福 使臣答 後 王北向跪 叩頭興平身 東西相向 再拜

(f) (이것이) 끝나면, 간단히 서로 인사를 나누고 동서로 마주 앉아 차를 마신 뒤에, 왕은 안으로 들어가 잠깐 쉰다. (그 사이에) 세자는 사신과 서로 만나 再拜한다. 다음으로는 諸君이, 다음으로는 宰樞가, 다음으로는 百官이 모두 동일하게 그렇게 한다.
訖 略敘寒暄 東西對坐 設茶後 王入內小歇 世子與使臣相見 再拜 次 諸君 次 宰樞 次 百官 皆同

(g) (이것이) 끝나면, 왕은 나와 자리로 가서 사신을 대접한다.
訖 王出就坐 饗使臣

(h) 그 뒤 口宣聖旨가 있는 使臣이면 왕이 친히 公館까지 전송하거나 혹은 세자를 시켜 전송하게 한다. 口宣聖旨가 없는 使臣이면 재추를 시켜 공관까지 전송하게 한다.
後 有口宣使臣 則王親送至館 或令世子送之 無口宣使臣 則命宰樞送至館

(i) 만약 手詔·勅符이면 이 의례를 쓰지 않고, (명) 조정에서 頒降한 의주에 의거한다.
若有手詔勅符 則不用此禮 依朝廷頒降儀⁴²⁾

재삼 언급하였듯이, 迎大明無詔勅使儀는 명이 보낸 咨文 등의 公牒을 지니고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와 그 의주인데, 迎大明無詔勅使儀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의주는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

42) 『고려사』 권65, 志19 禮7 賓禮 迎大明無詔勅使儀.

는 공첩과 口宣聖旨가 함께 전달되어 온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신이 공첩만을 가지고 온 경우이다.⁴³⁾ (d)의 “正殿 가운데에 이르러 마주 서는데, 사신은 동쪽에 서고 왕은 서쪽에 선다. 口宣聖旨가 있으면 사신은 선 채로 (성지를) 말해 전하고, 왕은 북쪽을 향해 꿇어앉아 이를 듣는다. 그러고서 (사신이) 가지고 온 公牒을 받는다”라고 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러한 두 경우를 대비해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공첩과 口宣聖旨가 함께 전달되어 온 경우만을 상정하여 작성한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다. 하지만 (h) 부분에서 공첩을 지니고 온 사신을 ‘有口宣使臣’과 ‘無口宣使臣’으로 구분한 데서, 迎大明無詔勅使儀는 두 가지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되었음이 확실하다. ‘無口宣使臣’은 口宣聖旨 없이 공첩만을 전하기 위해 온 사신을 가리키기 때문이다.⁴⁴⁾

이제 본격적으로 迎大明無詔勅使儀가 어떤 것들을 활용하여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a) 부분은 왕이 관원을 보내 사신을 遠接하는 예식절차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예식절차는 고려전기의 외교의례로 고려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迎北朝詔使儀, 迎北朝起復告勅使儀⁴⁵⁾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와 달리 迎大明詔使儀와 迎大明賜勞使儀에서는 거의 동일한 구절이 확인된다. 즉 迎大明無詔勅使儀의 ‘使臣入國境 守關官馳報 王遣官遠接 使臣近王京’ 구절은 迎大明詔使儀의 ‘使臣入國境 先遣關人 馳報於王 王遣官 遠接詔書’와 迎大明賜勞使儀의 ‘使臣至國境 先遣關人入報 王遣官遠接’과 거의 흡사하다. 따라서 迎大明無詔勅使儀의 해당 구절이 迎大明詔使儀와 迎大明賜勞使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는 추정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⁴⁶⁾

43) 명 사신이 전하는 口宣聖旨란 문서가 아닌 구두로 이루어진 황제의 명을 의미한다. 정동훈, 2017 앞의 논문, 241-245면 참조.

44) 이렇다고 할 때 迎大明無詔勅使儀에서 ‘無詔勅使’란 공첩을 전하기 위해 온 사신을 의미할 것이다.

45) 『고려사』 권65, 志19 禮7 賓禮 迎北朝詔使儀; 迎北朝起復告勅使儀. 이들 의례에서 北朝는 거란을 지칭한다(김성규, 2014 『고려 외교에서 의례(儀禮)와 국왕의 자세』, 『역사와 현실』 94). 금은 사신 왕래 등을 요가 했던 예대로 행한 데서(『고려사』 권15 世家15 인종 4년 9월 辛未), 이들 의례가 고려와 금 사이에도 활용되었을 것은 비교적 분명하다.

46) 상대적으로 迎大明賜勞使儀에 비해 迎大明詔使儀를 더 참조한 듯싶다.

한편 迎大明詔使儀와 迎大明賜勞使儀가 ‘蕃王’을 ‘王’으로 수정하는 식으로 고려의 실정을 반영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번국의주』를 그대로 모사한 것과는 달리, 迎大明無詔勅使儀는 迎大明詔使儀와 迎大明賜勞使儀를 활용하면서도 고려의 실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사신이 王京에 가까이 오면(使臣近王京)’이라는 구문은 迎大明詔使儀와 迎大明賜勞使儀에는 전혀 없는 내용으로, ‘왕은 관리를 보내 멀리에서부터 [사신을] 맞이하게 한다(王遣官遠接)’라는 절차와 사전 준비 사이에 문맥상 또는 의례 절차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문을 삽입한 경우였다고 할 수 있다.

(b) 부분은 예식 거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해당한다. 이 절차의 내용은 迎北朝詔使儀와 迎北朝起復告勅使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와 달리 迎大明詔使儀와 迎大明賜勞使儀에서는 거의 동일한 구절이 확인된다. 즉 迎大明無詔勅使儀의 ‘前期 令有司 於迎賓館設幄帳 城門街路結綵’ 구절은 고려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公館을 迎賓館으로 구체화하는 식의 미미한 변개는 있었어도, 迎大明詔使儀의 ‘前期 令有司 於國門外公館 設幄結綵’와 迎大明賜勞使儀의 ‘前期 有司 於國門外公館 設幄結綵’와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a) 부분의 작성 방식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c) 부분은 국왕이 세자와 백관을 대동하고 교외에서 사신을 영접하고 그런 후 궁궐로 이동하는 예식절차에 해당한다. 이 절차의 내용 역시 迎北朝詔使儀와 迎北朝起復告勅使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고려전기에 왕은 궁궐 내에서 사신을 맞이하였기에,⁴⁷⁾ 교외에까지 사신을 맞이하러 나갈 일이 없었다. 이와 달리 迎大明詔使儀와 迎大明賜勞使儀에서는 국왕이 衆官을 이끌고 도성 밖에까지 나가 사신을 영접하는 구절이 확인된다.

(c) 부분도 迎大明詔使儀와 迎大明賜勞使儀의 해당 내용을 활용하긴 했지만, 그 활용 정도는 (a)와 (b) 부분과 비교해서 제한적이었다. 국왕이 세자와 백관을 대동하고 교외에서 사신을 영접하고 그런 후 궁궐로 인도한다고 하는 큰 틀은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와 동일하기는 하다. 국왕이 사신을 만나기 전까지의 예식절차도 전반적으로는 迎大明詔使儀와 迎大明賜勞使儀를 활용한 듯싶다.

47) 정동훈, 2015 앞의 논문 참조.

그런데 국왕과 사신 간의 의절은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와 이질적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자문 등의 공첩을 지닌 사신이 황제의 명령문서인 조서 및 황제가 내려준 예물인 ‘上賜’를 지닌 사신에 비해 禮的 위상이 현저히 낮은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는 공첩을 지니고 온 사신을 영접하는 예식을 ‘굳이’ 거행하였고 이 일환으로 황명 문서를 지니고 온 사신을 영접하듯이 국왕이 교외에까지 몸소 행차하여 사신을 맞이해 오기는 했지만, 공첩을 지니고 온 사신을 대하는 각종 의절은 황명 문서를 지니고 온 사신을 대하는 것과는 격이 달라야 했을 것이다. 구체적인 의절은 고려가 자체적으로 마련하였을 것인데, 기본적인 방향은 사신이 공첩을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와 달리 사신과 국왕을 상하 관계가 아니라 빈주 관계로 상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c) 부분에서 국왕과 사신 간의 의절은 迎大明賜勞使儀 중에서도 行禮를 마친 후의 국왕과 사신 간의 의절을 응용·활용한 듯싶다.⁴⁸⁾ 迎大明賜勞使儀의 ‘王入殿 西立東向 使臣東立西向 引禮唱再拜 使臣與王皆再拜 及出 使臣降自東階 王降自西階 遣使 送使臣還館’에서 보이는, 왕과 사신은 수평적 관계이고 왕은 서쪽에 사신은 동쪽에 자리하며 양자가 서로 마주 보며 재배하는 등의 行禮를 마친 후의 왕과 사신 간의 의절이 바로 그것이다. (c) 부분에서 왕과 사신이 마주 보고 揖禮를 행한다든가, 그런 후 서로 양보하면서 나란히 말을 타고 궁궐로 이동한다든가, 나란히 말을 타고 궁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신은 길의 왼쪽으로, 왕은 길의 오른쪽으로 간다(使臣由道左 王由道右)’든가 하는⁴⁹⁾ 의절은, 사신과 국왕을 빈주 관계로 상정하는 기본 방향에서, 그리고 이에 더하여 迎大明賜勞使儀에서 行禮 종료 후 국왕과 사신 간의 의절을 활용·응용하여 상황에 부합하도록 작성한 것이라 하겠다.

(d) 부분은 왕궁의 正殿에서 공첩을 받는(경우에 따라 口宣聖旨도 경청) 예식

48) 迎大明詔使儀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이 의주에는 행례 후의 예식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행례 후의 예식절차는 迎大明賜勞使儀의 것과 동일하기에 생략하였을 것이다.

49) ‘左’와 ‘右’는 각각 ‘東’과 ‘西’인 데서, 사신은 좌측에 왕이 우측에 위치한 것은 사신이 동쪽에 왕은 서쪽에 자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한편 이 의절은 홍무예제의 “使者는 말을 타고 龍亭 뒤 東邊에서 간다(使者上馬 在龍亭後東邊行)”라고 한 구절과도 관련이 있는 듯싶다. 『洪武禮制』 出使禮儀 참고.

절차에 해당한다. 이 예식절차는 ‘왕궁에 이르러 왕과 사신이 함께 말에서 내려 왕은 서쪽으로 해서 문으로 들어가고 사신은 동쪽으로 해서 문으로 들어감’→‘正殿 가운데에 이르러 使臣은 동쪽에 王은 서쪽에 마주하여 섬’ 순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공첩 외에 口宣聖旨도 있을 시에는 ‘사신은 선 채로 성지를 말하고 왕은 북쪽을 향해 꿇어앉아 이를 경청’→‘공첩의 접수’→‘왕은 叩頭를 행하고 일어나 몸을 펴’ 순으로, 공첩만이 왔을 시에는 ‘공첩의 접수’→‘왕은 叩頭를 행하고 일어나 몸을 펴’ 순으로 예식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부분은 迎大明無詔勅使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예식절차에 해당할 것이다. 이 절차 내용 또한 고려전기의 외교의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고려전기에는 왕이 공첩(자문)을 받을 일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제까지의 예식절차처럼 迎大明詔使儀와 迎大明賜勞使儀를 직접 응용·활용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공첩을 접수하는(口宣聖旨를 듣는 경우가 추가되기도 한) 상황 자체가 조서, 황제가 내려준 예물(칙서)을 받는 것과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간접적이긴 해도 이들 의주를 통해서 왕이 사신을 인도하여 궁궐에 도착한 후 정전으로 이동하여 공첩을 받는다고 하는 예식절차의 기본 틀은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예식절차의 틀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의절은 다음과 같은 방향과 방식으로 구체화하였을 것이다.

우선 사신과 국왕 간의 의절은 기본적으로 빈주 관계를 구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c)에서와 같이 공첩을 지니고 있는 사신의 위상을 고려해서 말이다. 왕궁에 이르러 왕과 사신이 함께 말에서 내려 왕은 서쪽으로 해서 문으로 들어가고 사신은 동쪽으로 해서 문으로 들어간다는가, 正殿 가운데에 이르러 使臣은 동쪽에 王은 서쪽에 마주하여 선다는가 하는 의절이 그러하다. 다음으로 공첩의 수수는 공첩이라는 문서의 성격과 위상을 감안하여 선독 없이 이루어졌다. 황명 문서를 받을 때와 달리 말이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황제를 상대로 한 의절에서는 臣禮가 행해졌다. 예컨대, 口宣聖旨가 있을 시에 使臣은 선 채로 [성지를] 말하고 왕은 북쪽을 향해 꿇어앉아 [이를] 경청한다는가, 공첩을 접수하고 나서 왕이 (황제를 대상으로 하여) 叩頭를 행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는가 하는 의절이 그러하다. 한편 ‘口宣聖旨가 있다면 使臣은 선 채로 [성지를] 말하

고 왕은 북쪽을 향해 꿇어앉아 [이를] 경청한다(有口宣聖旨 則使臣立宣 王北向跪聽)’라는 구절은 迎大明詔使儀와 迎大明賜勞使儀에 적시된 宣詔·宣制와 이 과정에서 왕의 跪聽을⁵⁰⁾ 참고하여 작성하였을 것이다.

(e) 부분은 공첩을 받은 이후 왕이 황제의 안부를 묻는 예식절차에 해당한다. 예식절차는 ‘왕이 使臣 앞으로 나아가 몸을 약간 굽히고 황제의 안부를 묻고 들음’→‘왕은 북쪽을 향해 꿇어앉아 叩頭를 행하고 일어나 몸을 펴’→‘사신과 왕이 동서로 서로 마주 보고 재배함’ 순으로 진행되었다. 迎北朝詔使儀와 迎北朝起復告勅使儀에는 왕이 사신에게 황제의 안부를 묻는 예식절차가 있긴 하나 이는 (e) 부분과 꽤 다르다. 가령 迎北朝詔使儀에서는, 공첩 접수라는 핵심 용무를 마친 후 황제의 안부를 묻는 (e) 부분과 다르게, 핵심 용무(조서 수여)에 앞서서 황제의 안부를 물었다(問皇帝體). 迎北朝起復告勅使儀도 마찬가지였다. 이밖에도 황제의 안부를 묻고 들은 이후에 迎大明無詔勅使儀에서는 ‘왕은 叩頭를 행하고 일어나 몸을 펴’→‘사신과 왕이 동서로 서로 마주 보고 재배함’ 순이었던 것과 달리, 迎北朝詔使儀에서는 ‘왕은 절하고 무도하고 절을 함’→‘宰臣 이하 侍臣은 절하고 무도하고 절을 함’ 순으로 예식이 진행되었다. 얼핏 유사한 듯싶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e) 부분은 迎北朝詔使儀와 迎北朝起復告勅使儀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참고하여 작성된 듯하다.

그런데 迎大明詔使儀와 迎大明賜勞使儀에는 (e) 부분과 같은 성격의 구절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작성하는데 迎大明詔使儀와 迎大明賜勞使儀(『번국의주』의 蕃國接詔儀注와 蕃國受印物儀注)는 참고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 의주가 핵심 용무(조서·印物(칙서) 수여)를 마친 후의 예식절차를 매우 소략하게 기재한 데서였을 것이다. 추정컨대, 이 부분은 洪武 시기에 작성된 명 지방 아문에서의 의례, 가령 迎接詔赦儀 등을 참고한 듯싶다. 『大明會典』에 수록된 迎接詔赦儀에 따르면(홍무 연간에 제정되었다고 함), 핵심 용무인 詔·赦書 수여를 마친 후에 ‘本處官班首 詣龍亭前 跪問聖躬萬福 朝使鞠躬答曰 聖躬萬福 衆官乃退 易服而見朝使 行兩拜禮 朝使答禮 禮畢 本處官復具鼓樂 送詔於官亭’이라고 하여 지방 아문의 班首는 사신에게 황제의 안부를 묻고 있다.⁵¹⁾ 迎大

50) 구체적인 기록은 다음과 같다. “王及衆官以下皆跪 宣詔官宣詔”(迎大明詔使儀)와 “王與衆官皆跪 使臣宣制云云 宣畢”(迎大明賜勞使儀).

明無詔勅使儀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手詔와 勅符를 지니고 온 사신을 ‘朝廷頒降儀’, 곧 迎接敕符制諭儀에 의거해서 맞이한다고 하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고려는 명 지방의례의 자국으로의 확장·적용을 이상하거나 어색한 일로 보지 않았을 것이기에, 명 지방의례를 응용해서 (e)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한 추정은 무리하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공첩 접수라는 핵심 용무를 마친 후 황제의 안부를 묻는 (e) 부분은 고려전기에 작성된 迎北朝詔使儀 등을 참고한 게 아니라 명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을 응용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명 지방의례를 활용했다고 해도 활용 정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명 지방의례와 달리 황명 문서가 아니라 공첩을 전하러 온 사신을 대상으로 하여 황제의 안부를 묻고 예를 주고받기 때문이었다. 핵심 용무를 마친 후의 ‘황제의 안부를 묻고 들음’→‘왕과 사신 간 배례’라는 예식절차의 기본 틀은 명 지방의례를 참고했을 수는 있어도 세부적인 의절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나름의 방향과 방식으로 마련하였을 것이다. 공첩을 지니고 온 사신임을 감안하여 사신에게 몸을 약간 숙여(稍躬身) 황제의 안부를 묻는다든가 사신과 왕이 동서로 서로 마주 보고 재배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왕의 臣禮도 있었으니, 안부를 전해 듣고서 ‘왕이 북쪽을 향해 꿇어앉아 叩頭를 행하고 일어나 몸을 펴는’ 행위가 그것이다.

(f)와 (g) 부분은 공식적인 예식절차가 끝난 후 행하는 私禮에 해당한다. 이 예식절차는 ‘왕과 사신 간에 인사말을 나누고 동서로 마주 앉아 차를 마심’→‘왕이 안으로 들어가 잠시 쉬는 사이에 사신은 세자, 諸君, 재추, 백관 순으로 이들과 서로 만나보고 再拜함’→‘왕이 나와서 자리에 앉으면 사신에게 음식을 대접함’ 순으로 진행되었다. 고려는 禮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예식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였을 것인데, 추정컨대, 당시 실행되어 오고 있던 사신과의 私禮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을 것이다.

사신을 객관까지 전송하는 예식절차인 (h) 부분도 고려의 자체 판단으로 작성되었을 것이다. 공첩을 지니고 온 사신을 ‘有口宣使臣’과 ‘無口宣使臣’으로 구분하여 위상 차이에 걸맞도록 전자는 왕이 직접 관소까지 배웅하거나 혹은 세자를

51) 『大明會典』卷74, 迎接詔敕儀.

시켜 배움하게 하고 후자는 재추로 하여금 배움토록 하였는데, 이러한 차별적 예식절차는 고려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무엇을 전거로 삼아 迎大明無詔勅使儀를 작성한 지를 파악하기 위해 迎大明無詔勅使儀의 의주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⁵²⁾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제한적이고 잠정적이거나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迎大明無詔勅使儀의 작성 과정에서 고려전기의 외교의례인 迎北朝詔使儀, 迎北朝起復告勅使儀는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외교의례 면에서 고려전기와 고려말기의 인식론적 단절은 심대하였다. 둘째, 고려는 공첩을 예식 없이 단순히 접수만 해도 되었는데 공첩을 지니고 온 사신을 ‘굳이’ 황명 문서를 지니고 온 사신처럼 영접하고자 한 데서인지, 예식절차의 기본적인 틀은 迎大明詔使儀와 迎大明賜勞使儀를 활용하여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의절에 있어서도 공첩과 황명 문서 간의 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迎大明詔使儀와 迎大明賜勞使儀에 해당 의절이 있는 경우 이를 직접 활용하였다. 셋째, 사신과 국왕 간의 의절은 기본적으로 빈주 관계를 구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사신이 공첩을 지니고 있을 때조차 그러하였다. 이는 공첩을 지니고 온 사신을 대하는 각종 의절은 황명 문서를 지니고 온 사신을 대하는 것과는 격이 달라야 해서였다. 고려의 자율적 해석이 돋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가장 핵심적인 의절이라 할 수 있는 공첩의 수수는 공첩이라는 문서의 성격과 위상을 감안하여 선독 없이 이루어졌다. 영접하는 예식을 거행하였다고 해도 공첩은 어디까지나 공첩이었던 것이다. 황명 문서가 아닌 것이다.⁵³⁾ 다섯째, (f), (g), (h)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활용할만한 전거가 없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은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예식절차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52) 고려는 迎大明無詔勅使儀의 작성 후에 공첩을 영접하는 예식을 거행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의주 작성 이전에 이미 그러한 예식을 거행하였을 것이기에, 迎大明無詔勅使儀의 작성은 이미 행해 온 예식(절차)을 문서로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첩을 지니고 온 사신을 영접하는 예식절차와 그 내의 각종 의절의 고안은 엄밀히는 迎大明無詔勅使儀의 작성 시가 아니라 이보다 선행한 해당 의례의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53) 이외에도 드물기는 했지만 의절들 중에는 황제를 상대로 한 의절이 있었고, 여기서는 巨禮가 거행되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蕃國儀注』의 활용 양상과 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고려말기 외교의례에 관한 보다 진전된 이해에 도달해 보고자 했다. 장기간 지속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원 복속기부터 조선말기까지 외교의례는 동질적이었는데, 본 연구 작업은 이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타 시기와 구분되는 고려말기 외교의례의 역사성을 포착하고자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주요 검토 내용을 열거·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고려가 『번국의주』를 모사하다시피 한 외교의례 의주를 제작한 의도와 이유를 규명해 보았다.

『고려사』禮志에 수록된 고려말기 외교의례(의주)인, 迎大明詔使儀, 迎大明賜勞使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進大明表箋儀는 각각 『번국의주』에 수록된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를 거의 모사하다시피 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번국의주』를 모사하다시피 한 외교의례 의주를 제작할 바에는 차라리 『번국의주』만을 사용해도 무방했을 터인데, 굳이 그러한 식의 외교의례 의주를 작성한 이유는 『번국의주』에 수록된 의주를 폐기·대체하고자 한 때문이 아니라, 이를 기본 전거로 활용하면서도 고려(인)가 일차적으로 참고·사용하기에 편리한 의주를 확보하고자 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본 전거로 기능한 『번국의주』는 불특정 번국을 대상으로 작성되었고 오탈자 등의 오류가 드물지 않게 있었으며 다소 번쇄한 면이 있었다. 이에 고려는 의례의 실무자나 감독·책임자가 외교의례의 예식절차 전반과 그 흐름을 보다 정확하고 용이하고 빠르게 파악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목적에서 『번국의주』와 별도로 외교의례(의주)를 마련하였을 것이다. 고려는 거의 복사본 같은 것을 작성하면서도, 외교의례의 작성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오탈자 등을 교정도 하고 고려의 실정을 반영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하고 중복된다 싶은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축약하는 變改를 단행하였다. 특히 이러한 생략·축약은 예식 전반의 흐름을 단번에 파악하는데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생략

· 축약 부분의 정확한 예식절차의 내용을 확인 ·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기본 전거로 기능한 『번국의주』를 참고하였을 것이다.

둘째, 고려가 『번국의주』에 수록된 의례들을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일괄 활용하여 외교의례 의주를 작성한 이유를 밝혀 보았다.

고려가 명이 하사한 『번국의주』에 수록된 의례들을 일괄 활용하여 외교의례 의주를 작성한 현상의 遠因은 원 복속기에 고려가 황제를 대상으로 한 원(몽골) 지방 아문 의례를 일괄 활용하여 외교의례를 거행한 사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곧 원 복속기에 고려가 원(몽골) 지방 아문의, 황제를 대상으로 한 각종 의례를 전면 활용한 것을 遠因으로 하여, 고려는 명이 사여한 『번국의주』에 수록된 의례들을 일괄 활용하여 외교의례 의주를 작성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현상의 近因은 고려와 명 공히 원 복속기에 고려에서 정동행성(승상)을 매개로 각종 지방 아문 의례를 활용 · 실행한 일을, 蕃國(제후)인 고려가 황제국이 마련한 의주를 토대로 각종 외교의례를 거행한 것으로 轉有하여 계승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명은 원 복속기의 경험을 전유 · 계승하여 번국 내에서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의 의주까지 직접 작성하였다. 이러한 외교의례 의주가 바로 『번국의주』에 수록된 蕃國接詔儀注, 蕃國受印物儀注,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 蕃國進賀表箋儀注였다. 고려도 前代의 경험을 전유 · 계승하여 황제를 대상으로 거행한 각종 의례와 그 방식을 지속하는 것 및 황제국 의주를 활용하여 외교의례를 거행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속에서, 명 측에 번국인 고려에서 명(황제)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의 의주를 요청하였고, 명은 이들 의주를 일괄하여 책자 형태로 만들어 고려에 하사하였다(『蕃國儀注』 하사). 이들 의례(의주)는 고려에게 생소한 것이라기보다는 원 복속기 이래로 행해 온 익숙한 의례였을 것이다. 이에 고려는 하사받은 이들 의주를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일괄 활용하여 대명 외교의례 의주를 마련하고 이들에 의거하여 대명 외교의례를 거행하였을 것이다.

셋째, 咨文 등의 公牒은 皇命 문서가 아니어서 예식 없이 단순히 접수만 해도 되었는데, 고려가 공첩을 지니고 온 사신을 영접하는 예식인 迎大明無詔勅使儀(의주)를 작성하고 거행한 이유를 해명해 보았다.

고려말기에 외교문서를 지니고 온 명 사신을 맞이하는 예식의 경우, 조서를 지니고 온 명 사신은 『번국의주』를 토대로 작성된 迎大明詔使儀로, 황제가 국왕에게 하사한 예물을 지니고 온 명 사신 또한 『번국의주』를 토대로 작성된 迎大明賜勞使儀로 영접하였다. 이와 달리 手詔·勅符를 지니고 온 사신은 명이 하사한 의주도 없고 해서 명의 지방의례인 迎接敕符制諭儀를 활용하여 맞이하였다. 자문 등의 공첩을 지니고 온 사신은 迎大明無詔勅使儀로 맞이하였다. 명이 고려를 상대로 하여 의주를 반사해 주지 않은 데서는 공첩이나 手詔·勅符나 마찬가지로 지였지만, 고려는 자문 등의 공첩을 지니고 온 사신을 手詔·勅符처럼 명의 지방 아문 등에서 해당 문서를 맞이하는 예식(의주)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迎大明無詔勅使儀를 작성하여 맞이하였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본래 공첩은 詔書, 手詔·勅符 등과 달리 황명 문서가 아니었기에 예식 없이 단순히 접수만 해도 되었고,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공첩을 맞이하는 예식(의주)이 마련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고려는 자문 등의 공첩을 지니고 온 사신을 유례없이 예식을 갖추어 맞이하고자 하였다. 명은 자문 등의 공첩을 맞이하는 예식(의주)을 고려(번국)에 하사하지도 않았고, 명 내에조차 공첩을 맞이하는 예식(의주)이 부재한 사실로 보아 고려가 자문 등의 공첩을 예식을 갖추어 맞이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공첩을 맞이하는 예식(의주)을 작성·운영한 것은 명의 강요·요구에서가 아니라 고려의 판단·의지가 작용한 결정이었다. 고려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당시는 원 복속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관문서인 자문 등의 공첩이 양국 사이에 오가고 있었고 오히려 우왕대 이후로는 외교 행위가 자문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자문에는 일반적으로 고려를 대상으로 한 홍무제의 성지가 담겨 있는 상황에서, 고려는 원 복속기와 달리, 그리고 명의 지방 아문과 달리 공첩을 접수하고 마는 식이 아니라 황명 문서와 다름없이 예식을 갖추어 맞이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고려는 원컨 원치 않건 간에 자체적으로 迎大明無詔勅使儀를 작성해야 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려가 『번국의주』와 무관하게 迎大明無詔勅使儀를 자체 제작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방식과 전거의 실체를 탐색해 보았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무엇을 전거로 삼아 迎大明無詔勅使儀를 작성한 지

를 파악하기 위해 迎大明無詔勅使儀의 의주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迎大明無詔勅使儀의 작성 과정에서 고려전기의 외교의례인 迎北朝詔使儀, 迎北朝起復告勅使儀는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 둘째, 예식절차의 기본적인 틀은 迎大明詔使儀와 迎大明賜勞使儀를 활용하여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의절에 있어서도 공첩과 황명 문서 간의 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迎大明詔使儀와 迎大明賜勞使儀에 해당 의절이 있는 경우 이를 직접 활용하였다. 셋째, 사신과 국왕 간의 의절은 기본적으로 빈주 관계를 구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사신이 공첩을 지니고 있을 때조차 그러하였다. 이는 공첩을 지니고 온 사신을 대하는 각종 의절은 황명 문서를 지니고 온 사신을 대하는 것과는 격이 달라야 해서였다. 넷째, 가장 핵심적인 의절이라 할 수 있는 공첩의 수수는 공첩이라는 문서의 성격과 위상을 감안하여 황명 문서와 달리 선독 없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활용할만한 전거가 없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은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예식절차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주제어 : 蕃國儀注, 외교의례, 公牒, 고려, 명

투고일(2020. 7. 24), 심사시작일(2020. 8. 21), 심사완료일(2020. 9. 2)

〈부록 1〉⁵⁴⁾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大明集禮』 권30, 賓禮1)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고려사』 권67, 志21 禮9 嘉禮)

是日 執事者陳設闕庭于王宮正殿 南向 香燭案于闕庭之前 王拜位于殿庭中 北向
 及褥位于香案前 衆官拜位于蕃王之南 每等異位 重行北向 司禮司贊位于衆官拜位
 之北 司禮在西 司贊在東 俱相向 司香二人位于香案前 東西相向

【前期 執事者設闕庭於王宮正殿 南向 香燭案於闕庭之前 王拜位於殿庭中 北向
 及褥位於香案前 衆官拜位於王位之南 每等異位 重行北向 司禮司贊位於衆官拜位
 之北 司禮在西 司贊在東 俱相向 司香二人位於香案前 東西相向】

是日 執事陳甲士軍仗旗幟于王宮門之外 樂工陳樂于拜位之南 引班引衆官 朝服入
 齊班于王宮門外之東西 司禮司贊司香 俱入就位 引禮啓請 王于後殿 具冕服 未賜
 者服本國之服 引衆官 入立殿庭東西 引禮導王出 樂作 王由西階 陞詣拜位 樂止 引禮
 立于拜位之左右 引禮引衆官 入就拜位 司贊唱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拜興拜興拜興 王與衆
 官皆鞠躬 樂作 拜興拜興拜興拜興拜興拜興拜興拜興 樂止 引禮導王 由東門入 樂作 至闕庭香案
 前拜位 樂止

【是日 執事陳甲士軍仗旗幟於王宮門之外 樂工陳樂於拜位之南 引班引衆官 朝服
 入 齊班於王宮門外之東西 司禮司贊司香 俱入就位 引禮啓請 王於後殿 具冕服
 引班引衆官 入立於殿庭之東西 引禮導王出 樂作 王由西階 詣拜位 樂止 引禮立於
 拜位之左右 引班引衆官 入就拜位 司贊唱四拜 樂作 王與衆官 皆四拜 樂止 引禮導
 王 由東門入 樂作 至闕庭香案前拜位 樂止】

54)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의 구절은 【】 기호 안에 기재하여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의 해당 구절과 구분되도록 했다. 蕃國正旦冬至聖壽率衆官望闕行禮儀注와 元正冬至上國聖壽節望闕賀儀 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引禮立于拜位之左右 引禮贊跪 司贊唱跪 王與衆官皆跪 引禮贊上香上香三上香
 司香 以香 跪進于王之左 王三上香 畢 引禮贊俯伏興平身 司贊唱俯伏興平身 王
 與衆官 皆俯伏興平身 引禮導王 由西門出 樂作 復位 樂止 司贊唱鞠躬拜興拜興拜
 興拜興平身 王與衆官皆鞠躬 樂作 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樂止

【引禮立於拜位之左右 引禮贊跪 司贊唱跪 王與衆官皆跪 引禮贊三上香 司香 以
 香 跪進於王之左 王三上香 畢 引禮贊俯伏興平身 司贊唱俯伏興平身 王與衆官
 皆俯伏興平身 引禮導王 由西門出 樂作 復位 樂止 司贊唱四拜 樂作 王與衆官 皆
 四拜 樂止】

司贊唱 搯笏鞠躬 三舞蹈 跪三拱手加額 山呼萬歲 山呼萬歲 再山呼萬萬歲 出笏俯伏
 興平身 王與衆官 搯笏鞠躬 三舞蹈 跪三拱手加額 山呼萬歲 山呼萬歲 再山呼萬萬歲
 出笏俯伏興平身 司贊唱鞠躬拜興拜興拜興平身 王與衆官 皆鞠躬 樂作 拜興拜
 興拜興平身 樂止 司贊唱禮畢 引禮啓禮畢 引王出 引班引衆官 以次出

【司贊唱 搯笏鞠躬 三舞蹈 跪左脚三叩頭 山呼萬歲 山呼萬歲 再山呼萬萬歲 出笏俯
 伏興 樂作 四拜 樂止 司贊唱禮畢 引禮啓禮畢 引王出 引班引衆官 以次出 如有朝
 廷官 遇正朝冬至聖壽節 出使 在國中者 常服先行禮 不在王與衆官行禮之列】

〈부록 2〉⁵⁵⁾

蕃國受印物儀注(『大明集禮』 권32, 賓禮3)

【迎大明賜勞使儀】(『고려사』 권65, 志19 禮7 賓禮)

使者至蕃國境 先遣關人入報 蕃王遣官遠接

【使臣至國境 先遣關人入報 王遣官遠接】

前期 有司 於國門外公館 設幄結綵 設龍亭於館之正中 備金鼓儀仗鼓吹於館所 以伺迎引 又於國城內街巷 結綵 又於王宮 設闕庭於殿上正中 設香案於闕庭之前 設蕃王受賜予位於香案之前 設蕃王拜位於殿庭正中 北向 衆官拜位於王拜位之南 異位重行 北向 設樂位於衆官拜位之南 北向 司贊二人於蕃王拜位之北 東西相向 引禮二人於司贊之南 東西相向 引班四人於衆官拜位之北 東西相向 陳儀仗於殿庭之東西

【前期 有司 於國門外公館 設幄結綵 設龍亭於館之正中 備金鼓儀仗鼓樂於館所 以伺迎引 又於國城內街巷 結綵 又於王宮 設闕庭於殿上正中 設香案於闕庭之前 設王受賜予位於香案之前 設王拜位於殿庭正中 北向 衆官拜位於王拜位之南 異位重行 北向 設樂位於衆官拜位之南 北向 司贊二人於王拜位之北 東西相向 引禮二人於司贊之南 東西相向 引班四人於衆官拜位之北 東西相向 陳儀仗於殿庭之東西】

遠接官接見使者 迎至館所 以上賜 安奉於龍亭中 遣使馳報王 是日 蕃王率百官 出迎於國門外 遠接官迎上賜 出館至國門 金鼓在前 次 衆官常服乘馬行 次 王乘馬行 次 儀仗鼓樂 次 上賜龍亭 使者常服乘馬 行於龍亭之後

【遠接官接見使臣 迎至館所 以上賜 安奉於龍亭中 遣使馳報王 是日 王率衆官 出

55) 迎大明賜勞使儀의 구절은 【】 기호 안에 기재하여 蕃國受印物儀注의 해당 구절과 구분되도록 했다. 蕃國受印物儀注와 迎大明賜勞使儀 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迎於國門外 遠接官迎上賜 出館至國門 金鼓在前 次 衆官常服乘馬行 次 儀仗鼓樂 次 上賜龍亭 使臣常服乘馬 行於龍亭之後】

迎至宮中 金鼓分列於殿外門之左右 衆官分立殿庭之東西 置龍亭於殿上正中 使者立於龍亭之東 引禮引蕃王 引班引衆官 各就拜位 立定 司贊唱 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蕃王及衆官皆鞠躬 樂作 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樂止 引禮引蕃王 詣龍亭前 使者稱有制 引禮贊 跪 司贊唱 跪 蕃王與衆官皆跪 使者宣制曰皇帝勅使某持印賜爾國王某 并賜某物 宣畢 使者捧所賜印并某物 西向授蕃王 蕃王跪受 以授左右 訖 引禮唱 俯伏興平身 司贊唱 俯伏興平身 蕃王及衆蕃官 皆俯伏興平身 引禮引蕃王 出復位 司贊唱 鞠躬拜興拜興拜興平身 蕃王及衆官皆鞠躬 樂作 拜興拜興拜興平身 樂止 司贊唱 禮畢

【迎至宮中 金鼓分列於殿外門之左右 衆官分立殿庭之東西 置龍亭於殿上正中 使臣立於龍亭之東 引禮引王 引班引衆官 各就拜位 立定 司贊唱四拜 樂作 王及衆官皆四拜 樂止 引禮引王 詣龍亭前 使臣稱有制 引禮贊 跪 司贊唱 跪 王與衆官皆跪 使臣宣制云云 宣畢 使臣捧所賜物 西向授王 王跪受 以授左右 訖 引禮贊 俯伏興平身 司贊唱 俯伏興平身 王與衆官 皆俯伏興平身 引禮引王 出復位 司贊唱 四拜 樂作 王及衆官皆四拜 樂止 司贊唱 禮畢】

引禮引蕃王入殿 西立東向 使者東立西向 引禮唱鞠躬拜興拜興平身 使者與蕃王皆鞠躬拜興拜興平身 使者降自東階 蕃王降自西階 遣官送使者還館

【凡行禮畢 王入殿 西立東向 使臣東立西向 引禮唱 再拜 使臣與王皆再拜 及出使臣降自東階 王降自西階 遣使送使臣還館】

〈Abstract〉

The Utilization of *Beon'guk Euiju*(蕃國儀注) and its Character in
the late Koryo Dynasty

Choi Jongsuk *

This article was intended to reach a more advanced understanding of the diplomatic ritual of the late Koryo dynasty, focusing on understanding the use of *Beon'guk Euiju* (蕃國儀注) and its characteristics. From a long-term and macroscopic point of view, the diplomatic ritual from the mongol subjugation period to the late Chosun dynasty was homogeneous.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capture the historicity of Koryo's diplomatic ritual, which are different from other periods while assuming this homogeneous fact. The main considerations are as follows:

First, I explored the intention and reason that Koryo produced procedures of diplomatic ritual imitating *Beon'guk Euiju*(蕃國儀注).

Second, I explained the reason why Koryo made procedures of diplomatic ritual by making full use of the rituals contained in *Beon'guk Euiju*(蕃國儀注), not by choice.

Third, the official documents(公牒) such as Chamun(咨文) were only necessary to be received without any welcoming ceremony, but Koryo prepared and performed procedures of the ritual(迎大明無詔勅使儀) to greet the envoys who carried the official documents(公牒) such as *Chamun*(咨文). I tried to explain the reason.

Finally, I explored the methods and supporting data used in the process of self-producing procedures of the ritual(迎大明無詔勅使儀) to greet the envoys who carried the official documents(公牒) such as *Chamun*(咨文).

Key Words : *Beon'guk Euiju*(蕃國儀注), Diplomatic Ritual, Official Document(公牒), Koryo, Ming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Korean History, Dongduk Women's University.